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3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세액공제율 상향 등	3
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개요	3
나.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에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추가(이연회의원안)	6

I. 개요

1.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3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1. 23.
- (3) 회 부 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

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
자 함(안 제104조의15).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세액공제율 상향 등

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개요

□ 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¹⁾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²⁾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이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하여 투자·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것임.

동 제도의 적용대상은 ①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①과 ②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임.³⁾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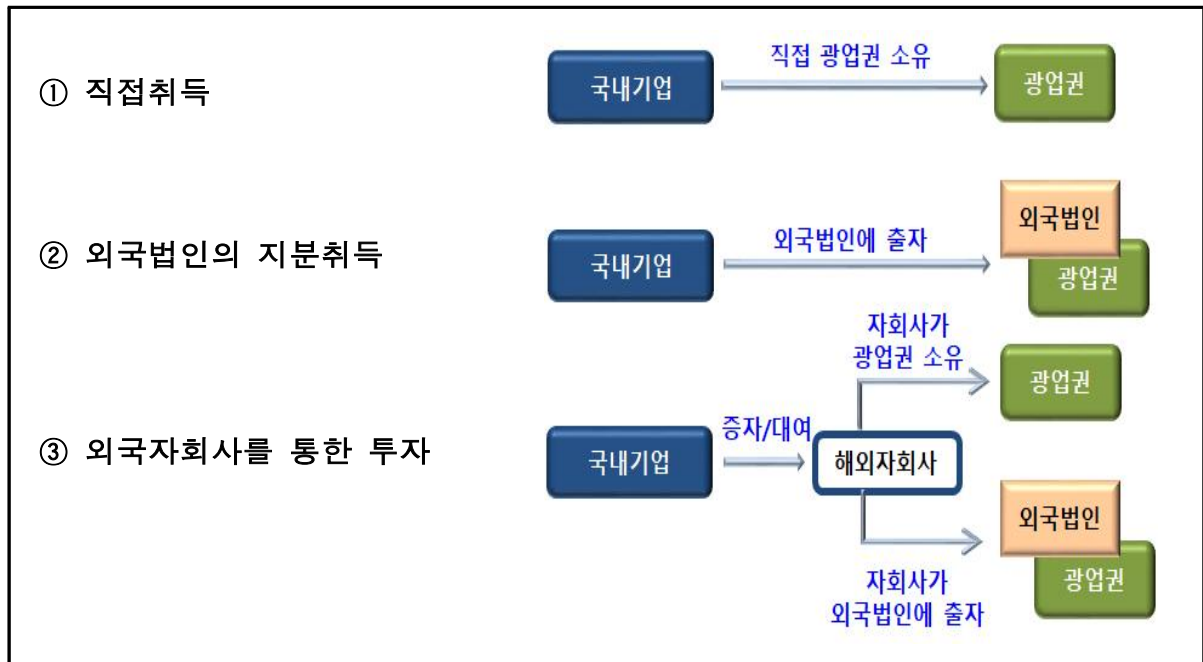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광업권은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를 의미하며,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를 의미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유형]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그리고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또는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음.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7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다가 2013년에 일몰이 도래하였는데,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었음.

정부는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그런데 무리한 투자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공기업 부실 등으로 이어져 석유공사 유전개발 출자 축소, 광물공사 자원개발 중단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 출자가 감소하였음.⁵⁾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지원 예산 감액 등 정부 지원 축소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유인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5) 유전개발출자(억원): ('12)6,903 → ('16)300 → ('20)135 → ('22)376 → ('23)301 → ('24)481
광물자원공사출자(억원): ('13)1,800 → ('17)300 → '19년 이후 자원개발출자 0

이 더욱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2021년 기준 전체 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63억 2,300만 달러에서 23억 9,200만 달러로 △62.1% 감소한 가운데, 석유·가스는 △56.1%, 일반광물은 △75.9% 감소하였음.⁶⁾

또한, 석유가스·광물 분야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은 2013년 536개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3년 387개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그리고 신규투자도 2008년 107건에서 2022년 5건, 2023년 2건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현황]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가스	193	182	166	141	131	122	119	118	110	105	100
일반광물	343	345	334	335	322	316	308	301	291	289	287
합계	536	527	500	476	453	438	427	419	401	394	387

자료: e-나라지표

해외자원개발 지표로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자원개발률’이 사용되는데, 2023년 기준 석유가스의 자원개발률은 11%이며, 6개 전략광물인 유연탄은 40%, 우라늄 0%, 철 37%, 동 12%, 아연 23.4%, 니켈 43.3%임

6)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글로벌 자원전쟁 시대,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효율화 방안’, 2023. 6.

[자원개발률 현황]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가스	14	14	16	15	13	13	13	12	11	11	11
유연탄	56	55	53	50	38	30	32	34	41	40	40
철	22	18	15	28	26	32	32	34	34	43	37
동	11	11	6	7	8	8	10	12	8	10	12
아연	21.2	21.5	21.2	22.8	20.6	19.9	20.7	21.5	21.6	19.4	23.4
니켈	45.8	61.7	68.9	63.2	61.8	55.2	55.0	47.2	44.8	44.0	43.3

자료: e-나라지표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실적은 887억 6,300만 달러(석유가스 682억 4,000만 달러, 일반 광물 205억 2,300만 달러)이며, 이중 629억 7,800만 달러(석유가스 503억 2,500만 달러, 일반광물 126억 5,300만 달러)를 회수하였음.

나.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에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추가(이연희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 104조의15)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①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③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요건: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 <신 설> ○ 공제율: 3% ○ 사후관리: 세액공제액 등 추정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 적용기한: 2026. 12. 31.	□ 과세특례 대상에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추가 ○ 특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출자금액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 세액공제액 등 추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이연회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8)

□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에 리튬, 흑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이하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중국은 리튬 등 핵심광물 자원의 부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원광을 수입하여 정제 및 제련 등 가공과정을 거쳐 이차전지 소재로 공급하고 있음.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중국을 배제한 자원 공급망을 재편중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여 공급망 리스크와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였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핵심자원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일관된 공급망 관리를 도모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5년 2월부터 시행중임.

□ 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⁷⁾가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⁸⁾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이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하여 투자·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2007년 최초 도입 이후 2013년 일몰되었으나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되어 2024년부터 시행되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및 출자에 한정되어 있어 필수광물의 정제련시설을 신설 및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으로, 핵심광물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핵심자원의 공급망이란 자원의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 등 국내외에서 핵심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 세액공제는 자원의 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한 이후 전환·가공하는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필수광물의 정제 및 제련과 관련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세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8) 광업권은 일정한 지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권리를 의미하며,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할 권리를 의미함

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2월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 기술⁹⁾ 및 니켈광 대상 니켈 회수공정 기술¹⁰⁾ 등 핵심광물 정·제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였음.

따라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관련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에 대하여 최대 12%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내국인이 광물의 정제련시설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소재 국가와 무관하게 현재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최대 10%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9) 고순도 리튬화합물 제조 기술: 리튬 광석 또는 염호 등 천연리튬 자원으로부터 고순도 99.5% 리튬화합물(Li₂CO₃, LiOH 등)을 제조하기 위한 선광·제련 공정 기술

10) 니켈광 대상 니켈 회수공정 기술: 니켈광(라테라이트 등)으로부터 니켈을 회수하기 위한 선광·제련(고압산침출, 질산침출 등)·추출·정제 기술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공 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문 의 처

02)6788-5154